

(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-참조2)

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7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11.

발 의 자 : 김용·강상태·한성심

김해숙·김선임·유근주

정훈(7명)

1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개정 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문구를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개정(안 제5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별 첨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5. 관계법령 발체 : 별 첨

성남시 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5조 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	제5조 (장애와 상해의 기준) ----- ----- -----“장애등급”----- -----.

【 관계법령 발취 】

□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

현행 : [시행 2012.9.1] [대통령령 제24077호, 2012.8.31, 타법개정]

제45조(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)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(이하 "장애등급"이라 한다)은 별표 3과 같으며,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. 다만,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.

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3.2]

[시행 2010.1.1] [대통령령 제21974호, 2010.1.1, 일부개정]

제45조(장애상태의 정도구분)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장애상태의 정도구분(이하 "장애등급"이라 한다)은 별표 2와 같으며,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하여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. 다만,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. <개정 2000.12.30, 2010.1.1>

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<신설 2000.12.30, 2008.2.29, 2010.1.1>

[시행 2009.12.7] [대통령령 제21868호, 2009.12.7, 일부개정]

제45조 (폐질상태의 정도구분)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(이하 "폐질등급"이라 한다)은 별표 2와 같으며, 폐질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 폐질상태에 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. 다만,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. <개정 2000.12.30>

② 제1항의 폐질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<신설 2000.12.30, 2008.2.29>

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 발의자 서명부

[illegible]